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8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8월 8일

3. 제안이유

- 도의회 의장전용 차량 및 소방차량 신규구입에 따라 운영요원 확보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,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

4. 주요골자

▷ 정원 : 40명 증원

- 도의회사무처 - 1명(기능10등급(운전) 1)
 - . 의장전용차량 운전원 : 1명
- 직속기관(소방관서) - 39명(위2, 장2, 교15, 사20)
 - . 청주소방서 : 6대(대형펌프1, 구조1, 구급4), 18명
 - . 충주소방서 : 1대(대형펌프1), 4명
 - . 제천소방서 : 1대(구급1), 2명
 - . 영동소방서 : 2대(승용1, 진단1), 2명
 - . 증평소방서 : 6대(지휘1, 화물1, 승용1, 조명1, 구조1, 구급1), 13명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이는 현행 충청북도의 본청,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총수에
있어 의회사무처 57명을 58명으로 1명 증원하고, 직속기관의 910명을
949명으로 3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, 이와 동시에 충청북도 의회
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제4조의 정원에 관한
조문을 부칙조항으로 명시하여 동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
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. 의회사무처 1명증원은 의장전용차량 운전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
- . 직속기관 정원의 39명 증원은 청주, 충주, 제천, 영동, 증평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신규구입과 관련 소방장비 운영에 따른 운전원 및 조작용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

본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과 그에 따른 소요인력의 충원을 위한 것으로 승인하여 증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 부

- .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